2019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9. 10.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 사유

□ 거점소독시설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

○ 축산차량 등을 통한 각종 질병전파를 막기 위한 성주군 거점소독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필요.

○ 현재 임시 소독시설 운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완벽한 소독의 어려움, 폐수처리 문제,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해결하고, 질병의 차단방역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신축 토지 매입이 절실함.

2. 제안 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3. 주요 골자

□ 거점소독시설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

○ 사업개요

- 위 치 :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360번지
- 면 적 : 1,375㎡(416평)
- 소요예산 : 178백만원 정도
- 사업기간 : 2019. 10. ~ 2020. 12.
- 필지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재 산 표 시				부지매입 추 정 액	소유자	비 고
리	지번	지목	지적			
옥성	360	전	1,375	178,062	백종식	

○ 거점소독시설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18. 8. ~ 2020. 12.
- 사 업 비 : 786,400천원(부지 매입비 별도)
 ·'18당초예산(명시): 586,400천원(국비 293,200, 도비 87,960, 군비 205,240)
 ·'19당초예산 : 200,000천원(군비추가)
- 건축면적 : 300㎡ 정도
- 사업내용
 · 차량소독용 터널식 소독기 및 대인소독기, 전문세차용 고압스팀세척기
 · 축산차량 인식용(GPS) 전광판 및 소독필증 발급 장치
 · 자재 보관 창고 및 기타 기반시설 설치 등

○ 추진계획
- 2019. 10.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2019. 11. : 정리추경예산 반영
- 2019. 12. : 토지 매입 및 설계용역
- 2020. 2. : 공사발주 및 계약
- 2020. 6. : 준공 및 시설 운영

○ 기대효과
- 영구적인 거점소독시설 설치로 축산 전염병 사전차단 및 농가보호
- 성주 IC 인근 및 군 중앙에 위치하여 외부 차단효과 극대화
- 민가와 떨어져 있어, 운영에 따른 민원 발생 최소화
- 3년간 거점소독장소와 연접하여 축산관계자들에 홍보 완료

붙임 2019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1부.

2019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01 18,127 605.43 8,630,000 270,000			103 129,914 9,310.71 6,878,062 14,500,000			114 148,041 9,916.14 15,508,062 14,770,000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101 18,127 605.43 8,630,000 270,000			103 129,914 9,310.71 6,878,062 14,500,000			114 148,041 9,916.14 15,508,062 14,770,000			
	2.교환으로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으로처분	토지 건물 기타										

2019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3차 수시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전	대가면 옥성리 360	1,375	178,062	하반기	거점소독시설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	
계	토지	대가면 옥성리 360	1,375	178,062	하반기	거점소독시설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	
	건물						
	기타						

2019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교환대상수량	추정가액	교환시기	교환사유	교환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량						
건		처분 취득		해		당		없		음	
계	토지	처분 취득									
	건물	처분 취득									
	기타	처분 취득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2019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매각대상수량	과표 또는 평가액	매각시기	매각사유	매수희망자 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량						
		해		당		없		음	
계	토지 건물 기타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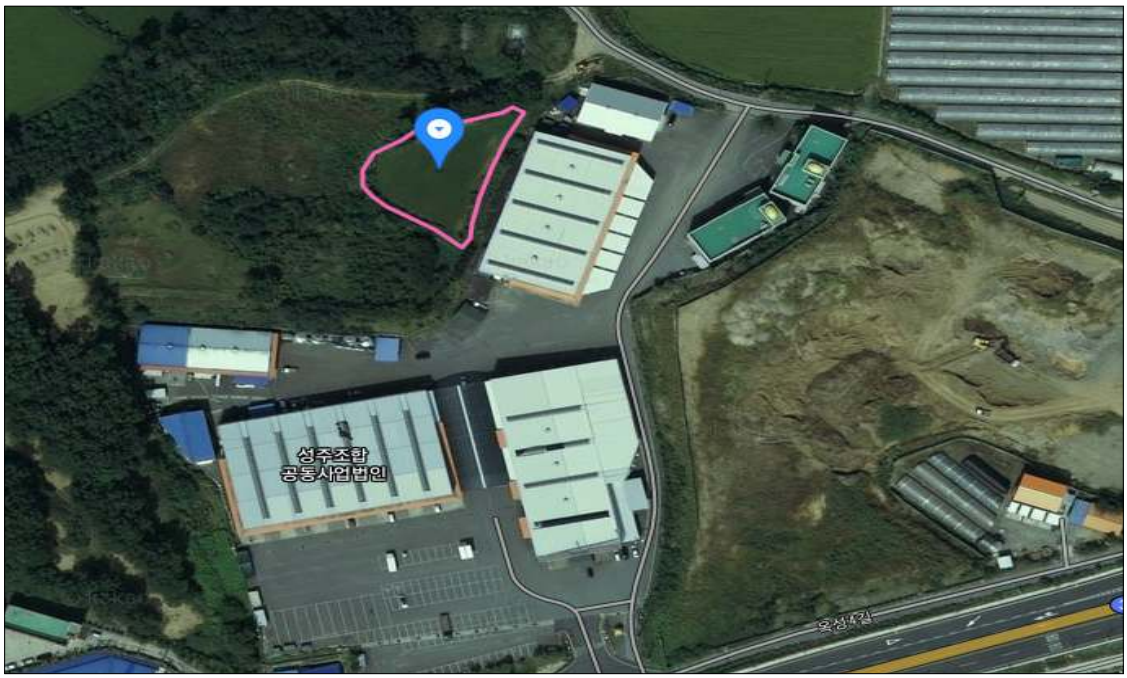
2019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양여대상수량	과표또는평가액	양여시기	양여사유 및 근거법령	양수자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량						
		해		당		없		음	
계	토지 건물 기타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거점소독시설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 참고자료



<위치도>



<현황사진>